

# 학교법인 영남학원

## 2023학년도 제2차 이사회 회의록

구분	이사	감사
임원정수	8명	2명
재직임원	8명	2명
참석임원	6명	2명

1. 일시: 2023년 6월 21일(수) 14:00~17:40 (회의소집통보일: 2023년 6월 12일)

2. 장소: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 영의관 4층 학교법인 영남학원 이사장실

### 3. 임원 출결사항

#### ○ 참석임원

이사(6명): 한재숙, 이종우, 박원훈, 이인호, 김진삼, 최외출

감사(2명): 김현환, 이상훈

#### ○ 결석임원

이사(2명): 이시원, 윤상현

감사(0명)

#### ○ 배석자

김성철(법인 기획조정실장), 김종수(영남대학교 인사관리처장),

김승철(영남대학교 기획처장), 방세정(영남대학교 총무처장),

김종연(영남대학교의료원장), 신경철(부속병원장), 이준(영남대학교의료원

기획조정처장), 서완석(영남대학교의료원 사무처장), 이재용(영남이공대학교

총장), 권기진(영남이공대학교 기획처장)

### 4. 안건

#### <의결사항>

제1호의안 학교법인 영남학원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

제2호의안 학교법인 영남학원 대학통합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승인의 건

제3호의안 2023학년도 법인 일반업무회계 추가경정 자금 예산(안) 승인의 건

제4호의안 영남대학교 직원인사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제5호의안 영남대학교 2023.09.01.자 전임교원 재임용(안) 승인의 건

제6호의안 영남대학교 2023.09.01.자 전임교원 승진임용(안) 승인의 건

제7호의안 영남대학교 2023.09.01.자 전임교원 특별승진임용(안) 승인의 건

제8호의안 영남대학교 2023.09.01.자 산학협력중점전임교원 재임용(안) 승인의 건

제9호의안 영남대학교 2023.09.01.자 산학협력중점전임교원 승진임용(안) 승인의 건

제10호의안 영남대학교 2023.09.01.자 외국인교원 재임용(안) 승인의 건

간서명	이사장	한재숙	이사	3 이인호	이사 김진삼
-----	-----	-----	----	----------	-----------

제11호의안 영남대학교 2023.09.01.자 외국인교원 승진임용(안) 승인의 건  
제12호의안 영남대학교 고정자산 폐기(안) 승인의 건  
제13호의안 영남대학교의료원 직제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제14호의안 영남대학교의료원 직원보수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제15호의안 영남대학교의료원 수익사업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승인의 건  
제16호의안 영남대학교의료원 고정자산 폐기(안) 승인의 건  
제17호의안 2023학년도 영남이공대학교 교비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승인의 건  
제18호의안 2024학년도 영남이공대학교 학생정원조정(안) 승인의 건  
제19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교원인사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제20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초빙교원 임용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제21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2023.08.031.자 교원 명예퇴직(안) 승인의 건

#### <보고사항>

- 제1호 영남대학교 교원 임용 보고의 건  
제2호 영남이공대학교 교원 임용(보직) 보고의 건

#### 5. 회의 내용

의            장: 재적이사 8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하다.

#### <의결사항>

##### 제4호의안 영남대학교 직원인사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의            장: 안건심의는 안건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산하기관의 안건부터 먼저 심의한 후에 법인 안건을 심의하겠다고 하며, 제4호의안 영남대학교  
직원인사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김종수 영남대학교  
인사관리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김종수 영남대학교 인사관리처장: [붙임1] 영남대학교 직원인사규정 개정(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            장: 제4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체이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4호의안 영남대학교 직원인사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은 김진삼  
이사의 동의와 이종우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5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5호의안 영남대학교 2023.09.01.자 전임교원 재임용(안) 승인의 건

의            장: 제5호의안 영남대학교 2023.09.01.자 전임교원 재임용(안) 승인의 건을

간서명	이사장		이사		이사	
-----	-----	--	----	--	----	--

상정하고, 김종수 영남대학교 인사관리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김종수 영남대학교 인사관리처장: [붙임2] 영남대학교 2023.09.01.자 전임교원  
재임용(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장: 제5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체이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장: 제5호의안 영남대학교 2023.09.01.자 전임교원 재임용(안) 승인의 건은  
박원훈 이사의 동의와 김진삼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5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하여 임용대상자의 생년월일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선언하다.

**제6호의안 영남대학교 2023.09.01.자 전임교원 승진임용(안) 승인의 건**  
의장: 제6호의안 영남대학교 2023.09.01.자 전임교원 승진임용(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김종수 영남대학교 인사관리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김종수 영남대학교 인사관리처장: [붙임3] 영남대학교 2023.09.01.자 전임교원  
승진임용(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장: 제6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체이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장: 제6호의안 영남대학교 2023.09.01.자 전임교원 승진임용(안) 승인의  
건은 박원훈 이사의 동의와 김진삼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5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하여 임용대상자의 생년월일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선언하다.

**제7호의안 영남대학교 2023.09.01.자 전임교원 특별승진임용(안) 승인의 건**  
의장: 제7호의안 영남대학교 2023.09.01.자 전임교원 특별승진임용(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김종수 영남대학교 인사관리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김종수 영남대학교 인사관리처장: [붙임4] 영남대학교 2023.09.01.자 전임교원  
특별승진임용(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장: 제7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체이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간서명	이사장	○	○	○	○	○
-----	-----	---	---	---	---	---

의 장: 제7호의안 영남대학교 2023.09.01.자 전임교원 특별승진임용(안)  
승인의 건은 박원훈 이사의 동의와 김진삼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5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하여 임용대상자의 생년월일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선언하다.

제임용(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김종수 영남대학교 인사관리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김종수 영남대학교 인사관리처장: [붙임5] 영남대학교 2023.09.01.자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 재임용(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 장: 제8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체이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8호의안 영남대학교 2023.09.01.자 산학협력중점전임교원

재임용(안) 승인의 건은 박원훈 이사의 동의와 김진삼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5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하여 임용대상자의 생년월일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선언하다.

제9호의안 영남대학교 2023.09.01.자 산학협력중점전임교원 승진임용(안)  
승인의 건

의 장: 제9호의안 영남대학교 2023.09.01.자 산학협력중점전임교원  
승진임용(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김종수 영남대학교  
인사관리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김종수 영남대학교 인사관리처장: [붙임6] 영남대학교 2023.09.01.자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 승진임용(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장: 제9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체이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9호의안 영남대학교 2023.09.01.자 산학협력중점전임교원

승진임용(안) 승인의 건은 박원훈 이사의 동의와 김진삼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5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하여 임용대상자의 생년월일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선언하다.

간서명	이사장	<del>金正植</del>	이사	<del>印順</del>	이사	<del>김정선</del>
-----	-----	----------------	----	---------------	----	----------------

제10호의안 영남대학교 2023.09.01.자 외국인교원 재임용(안) 승인의 건  
의 장: 제10호의안 영남대학교 2023.09.01.자 외국인교원 재임용(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김종수 영남대학교 인사관리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김종수 영남대학교 인사관리처장: [붙임7] 영남대학교 2023.09.01.자 외국인교원  
재임용(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 장: 제10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10호의안 영남대학교 2023.09.01.자 외국인교원 재임용(안) 승인의  
건은 박원훈 이사의 동의와 김진삼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5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하여 임용대상자의 생년월일과 국적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선언하다.

제11호의안 영남대학교 2023.09.01.자 외국인교원 승진임용(안) 승인의 건  
의 장: 제11호의안 영남대학교 2023.09.01.자 외국인교원 승진임용(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김종수 영남대학교 인사관리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김종수 영남대학교 인사관리처장: [붙임8] 영남대학교 2023.09.01.자 외국인교원  
승진임용(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 장: 제11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11호의안 영남대학교 2023.09.01.자 외국인교원 승진임용(안)  
승인의 건은 박원훈 이사의 동의와 김진삼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5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하여 임용대상자의 생년월일과 국적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선언하다.

(14:28 김현환 감사 퇴장하다)

### <보고사항>

#### 제1호 영남대학교 교원 임용 보고의 건

의 장: 보고사항 제1호 영남대학교 교원 임용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간서명	이사장	김종수	이사	박원훈	이사	김진삼
-----	-----	-----	----	-----	----	-----

받겠다고 하고, 김종수 영남대학교 인사관리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다.  
김종수 영남대학교 인사관리처장: [붙임9] 영남대학교 교원 임용 보고의 건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보고하다.

의 장: 제1호의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보고사항 제1호 영남대학교 교원 임용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접수한다고 선언하고, 참석이사 5명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하여 임용대상자의 생년월일과 국적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선언하다.

### <의결사항>

#### 제12호의안 영남대학교 고정자산 폐기(안) 승인의 건

의 장: 제12호의안 영남대학교의료원 고정자산 폐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방세정 영남대학교 총무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방세정 영남대학교 총무처장: 영남대학교 고정자산 폐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자료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고정자산 폐기(안)

구분	수량(점)	취득금액(원)	잔존가액(원)
기계기구	107	2,032,421,146	0
집기비품	20	399,797,284	0
합 계	127	2,432,218,430	0

의 장: 제12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12호의안 영남대학교 고정자산 폐기(안) 승인의 건은 김진삼 이사의  
동의와 박원훈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5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13호의안 영남대학교의료원 직제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의 장: 제13호의안 영남대학교의료원 직제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이준 의료원 기획조정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이준 의료원 기획조정처장: [붙임10] 영남대학교의료원 직제규정 개정(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 장: 제13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 체 이 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	-----	--	-----	--	-----	--

의 장: 제13호의안 영남대학교의료원 직제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은 김진삼  
이사의 동의와 박원훈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5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14호의안 영남대학교의료원 직원보수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의 장: 제14호의안 영남대학교의료원 직원보수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이준 의료원 기획조정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이준 의료원 기획조정처장: [붙임11] 영남대학교의료원 직원보수규정  
개정(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 장: 제14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체 이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14호의안 영남대학교의료원 직원보수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은  
이종우 이사의 동의와 박원훈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5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15호의안 영남대학교의료원 수의사업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승인의 건

의 장: 제15호의안 영남대학교의료원 수의사업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서완석 의료원 사무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서완석 의료원 사무처장: 영남대학교의료원 수의사업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자료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안)

구분	내용
보증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
피보험자	스타벅스, 아워홈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5년 가입 선납)
보험가입금액	1. 스타벅스(본관, 보증금 ) 2. 스타벅스(영의관, 보증금 3. 아워홈(보증금 ))
보험료 (예상)	1. 스타벅스 : 2. 스타벅스(영의관): 3. 아워홈 :
비고	※ 보험가입 예상금액이며 할인율은 변동 가능함. ※ 향후 동사업의 추가 청약 및 변경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도 본 안건의 의결로 갈음함.

의 장: 제15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체 이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 장: 제15호의안 영남대학교의료원 수의사업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간서명	이사장		이사		이사	
-----	-----	--	----	--	----	--

승인의 건은 김진삼 이사의 동의와 박원훈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5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는 비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선언하다.

#### 제16호의안 영남대학교의료원 고정자산 폐기(안) 승인의 건

의장: 제16호의안 영남대학교의료원 고정자산 폐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서완석 의료원 사무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서완석 의료원 사무처장: 영남대학교의료원 고정자산 폐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자료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 고정자산 폐기(안)

구분	수량(점)	취득금액(원)	잔존가액(원)
의료기기	20	881,040,000	20,000
집기비품	5	65,831,000	5,000
합계	25	946,871,000	25,000

의장: 제16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체이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장: 제16호의안 영남대학교의료원 고정자산 폐기(안) 승인의 건은 이종우 이사의 동의와 김진삼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5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17호의안 2023학년도 영남이공대학교 교비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승인의 건

의장: 제17호의안 2023학년도 영남이공대학교 교비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권기진 영남이공대학교 기획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권기진 영남이공대학교 기획처장: 2023학년도 영남이공대학교 교비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 수입과 지출은 본예산 대비 30,300천원이 증가한 69,673,263천원으로 편성하였다고 하고, 배부자료를 중심으로 항목별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장: 제17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체이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장: 제17호의안 2023학년도 영남이공대학교 교비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승인의 건은 김진삼 이사의 동의와 박원훈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5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간서명	이사장	한 <i>한</i>	이사	이사 <i>이</i>	이사 <i>이</i>	김 <i>김</i>
-----	-----	---------------	----	----------------	----------------	---------------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18호의안 2024학년도 영남이공대학교 학생정원조정(안) 승인의 건**  
의장: 제18호의안 2024학년도 영남이공대학교 학생정원조정(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권기진 영남이공대학교 기획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권기진 영남이공대학교 기획처장: [붙임12] 2024학년도 영남이공대학교 학생정원조정(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장: 제18호의안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체이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장: 제18호의안 2024학년도 영남이공대학교 학생정원조정(안) 승인의 건은 박원훈 이사의 동의와 이종우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5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19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교원인사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의장: 제19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교원인사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권기진 영남이공대학교 기획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권기진 영남이공대학교 기획처장: [붙임13] 영남이공대학교 교원인사 규정 개정(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장: 제19호의안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체이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장: 제19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교원인사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은 김진삼 이사의 동의와 박원훈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5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20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초빙교원 임용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의장: 제20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초빙교원 임용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권기진 영남이공대학교 기획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권기진 영남이공대학교 기획처장: [붙임14] 영남이공대학교 초빙교원 임용 규정 개정(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장: 제20호의안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체이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장: 제20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초빙교원 임용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은 박원훈 이사의 동의와 이종우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5명 전원이

간서명	이사장	○	이사	○	이사	○
-----	-----	---	----	---	----	---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21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2023.08.31.자 교원 명예퇴직(안) 승인의 건  
의장: 제21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2023.08.31.자 교원 명예퇴직(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권기진 영남이공대학교 기획처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권기진 영남이공대학교 기획처장: [붙임15] 영남이공대학교 2023.08.31.자 교원 명예퇴직(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장: 제21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체 이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장: 제21호의안 영남이공대학교 2023.08.31.자 교원 명예퇴직(안) 승인의 건은 이종우 이사의 동의와 김진삼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5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 <보고사항>

##### 제2호 영남이공대학교 교원 임용(보직) 보고의 건

의장: 보고사항 제2호 영남이공대학교 교원 임용(보직)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다고 하고, 권기진 영남이공대학교 기획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다.

권기진 영남이공대학교 기획처장: [붙임16] 영남이공대학교 교원 임용(보직) 보고의 건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보고하다.

의장: 제2호의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체 이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장: 보고사항 제2호 영남이공대학교 교원 임용(보직)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접수한다고 선언하다.

(16:12 이인호 이사 입장하다)

#### <의결사항>

##### 제1호의안 학교법인 영남학원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

의장: 제1호의안 학교법인 영남학원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김성철 법인 기획조정실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김성철 법인 기획조정실장: [붙임17] 학교법인 영남학원 정관 변경(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간서명	이사장	한	이사		이사	
-----	-----	---	----	--	----	--

김성철 법인 기획조정실장: [붙임18] 학교법인 영남학원 대학통합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장: 제2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토의 후)

전체이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장: 제2호의안 학교법인 영남학원 대학통합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승인의 건은 박원훈 이사의 동의와 이인호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6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3호의안 2023학년도 법인 일반업무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승인의 건  
의장: 제3호의안 2023학년도 법인 일반업무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김성철 법인 기획조정실장에게 안건을  
발표하도록 하다.

김성철 법인 기획조정실장: 2023학년도 법인 일반업무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 수입과 지출은 본예산 대비 220,010천원이 증가한 7,712,792천원으로 편성하였다고 하고, 배부자료를 중심으로 항목별로 상세하게 설명하다.

의장: 제3호의 안건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각 이사 투의 후)

전체이사: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다.

의장: 제3호의안 2023학년도 범인 일반업무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승인의 건은 박원훈 이사의 동의와 김진삼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이사 6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  
선언하다.

의장: 회의록 간서명 임원은 참석이사 6명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한재숙  
이사장, 김진삼 이사, 최외출 이사로 선정한다고 하고, 이사회의 폐회를  
선언하다.

간서명	이사장	<del>이사장</del>	이 사	<del>이사장</del>	이 사	<del>이사장</del>
-----	-----	----------------	-----	----------------	-----	----------------

2023. 6. 21.

학교법인 영남학원 이사장 한재숙 한재숙

이사 이종우

이종우

이사 박원훈

박원훈

이사 이인호

이인호

이사 김진삼

김진삼

이사 최외출

최외출

감사 김현환

김현환

감사 이상훈

이상훈

간서명	이사장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장	이종우	김진삼	최외출	김현환

[붙임1] 영남대학교 직원인사규정 개정(안)  
(제4호의안 관련)

현 행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1.10.20.	개 정 안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3.00.00.	개정 사유
<p>제21조(승진) ① 직원의 승진은 당해 직급 또는 상위직급의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직원인사평정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승진후보자 순위에 따라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승진임용코자 하는 인원수의 5배수 범위 내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3급 이상의 승진은 5배수 범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 (생략)</p>	<p>제21조(승진)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2조(승진 소요 최저년수) ① 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당해 직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4급 이상의 직원에 대하여는 소요년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행정직 · 기술직 · 사서직 · 별정직 가. 5급 : <u>5년</u> 나. <u>6급</u> : <u>4년</u> 다. <u>7급 이하</u> : <u>2년</u></p> <p>2. (생략)</p> <p>② (생략)</p>	<p>제22조(승진 소요 최저년수) ① (현행과 같음)</p> <p>1. 행정직 · 기술직 · 사서직 · 별정직 가. 5급 <u>이하</u> : <u>2년</u> 나. <u>삭제</u> 다. <u>삭제</u></p> <p>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승진소요연수 변경</p>

부칙(2023.00.0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3년 9월 1일자 승진 후보자 선정·제청 시부터 적용한다.

간서명	이사장		이사		이사	
-----	-----	--	----	--	----	--

[붙임2] 영남대학교 2023.09.01.자 전임교원 재임용(안)  
(제5호의안 관련)

□ 재임용 승인 요청 현황

No.	성명	생년월일	학부(과)	현 직위	발령사항		
					내역	임용기간	발령일자
1	김요한		유럽언어문화학부	부교수	부교수에 임함	2023.9.1. ~ 2028.8.31.	2023.9.1.
2	류준형		역사학과				
3	신동길		기계공학부				
4	이용주		경제금융학부				
5	허용석		경영학과				
6	정기위		회계세무학과				
7	최은영		내과학교실				
8	박신률		응급의학교실				
9	김동영		약학부				
10	김인성		주거환경학과				
11	정래필		국어교육과				
12	김민규		화학공학부	조교수	조교수에 임함	2023.9.1. ~ 2026.8.31.	2023.9.1.
13	정창윤		기계공학부				
14	김동욱		미래자동차공학과				
15	박철용		예방의학교실				
16	김승범		내과학교실				
17	장종결		내과학교실				
18	이석수		흉부외과학교실				
19	김혜금		정신건강의학교실				
20	오세안		방사선종양학교실				

\* 흉부외과학교실 조교수 이석수는 제출한 계재예정논문(1편)이 2023.8.31.까지 계재(출간)되는 조건부로 재임용하고자 함.

간서명	이사장	이사장	이 사	이사장	이사	김 전 교수
-----	-----	-----	-----	-----	----	--------

[붙임3] 영남대학교 2023.09.01.자 전임교원 승진임용(안)  
(제6호의안 관련)

□ 승진임용 승인 요청 현황

No.	성명	생년월일	학부(과)	현 직위	발령사항		
					내역	임용기간	발령일자
1	김요한		유럽언어문화학부	부교수	교수에 임함	2023.9.1.~ 정년까지	2023.9.1.
2	류준형		역사학과				
3	신동길		기계공학부				
4	이용주		경제금융학부				
5	허용석		경영학과				
6	정기위		회계세무학과				
7	최은영		내과학교실				
8	박신률		응급의학교실				
9	김동영		약학부				
10	김인성		주거환경학과				
11	정래필		국어교육과	조교수	부 교수에 임함	2023.9.1.~ 2028.8.31.	2023.9.1.
12	이은정		문화인류학과				
13	김승범		내과학교실				
14	김혜금		정신건강의학교실				
15	김정호		응급의학교실				
16	박은영		치과학교실				

간서명	이사장	의사장	이 사	의사	의사	승진임용
-----	-----	-----	-----	----	----	------

[붙임4] 영남대학교 2023.09.01.자 전임교원 특별승진임용(안)  
(제7호의안 관련)

□ 특별승진임용 승인 요청 현황

No.	성명	생년월일	학부(과)	현 직위	발령사항		
					내역	임용기간	발령일자
1	변정훈		기계공학부	부교수	교수에 임함	2023.9.1. 정년까지	2023.9.1.
2	강민규		내과학교실	조교수	부교수에 임함	2023.9.1. 2028.8.31.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	-----	--	-----	--	-----	--

[붙임5] 영남대학교 2023.09.01.자 산학협력중점전임교원 재임용(안)  
(제8호의안 관련)

재임용 승인 요청 현황

No.	성명	생년월일	학부(과)	현 직위	발령사항		
					내역	임용기간	발령일자
1	이석문		전자공학과	조교수	조교수에 임함	2023.9.1. ~ 2025.8.31.	2023.9.1.
2	사공운		컴퓨터공학과	부교수	부교수에 임함		
3	현대웅		시각디자인학과	조교수	조교수에 임함		

간서명	이사장	한국교수회	이사	한국교수회	이사	한국교수회
-----	-----	-------	----	-------	----	-------

[붙임6] 영남대학교 2023.09.01.자 산학협력중점전임교원 승진임용(안)  
(제9호의안 관련)

□ 승진임용 승인 요청 현황

No.	성명	생년월일	학부(과)	현 직위	발령사항		
					내역	발령일자	비고
1	김재성		무역학부	조교수	부교수에 임함	2023.9.1.	2024.8.31. 정년

간서명	이사장	한 	이사		이사	
-----	-----	---	----	--	----	---

[붙임7] 영남대학교 2023.09.01.자 외국인교원 재임용(안)  
(제10호의안 관련)

□ 외국인교원 재임용 승인 현황

NO	구분	성명	생년월일	학부(과)	현 직위	발령사항				비고 (국적)
						호봉	내역	임용기간	발령일자	
1	교육 중점	윌리암알지오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19	부교수	2023.9.1.~ 2024.8.31.	2023.9.1.	
2	교육 중점	기쿠치세이지		일어일문학과	부교수	25	부교수	2023.9.1.~ 2024.8.31.	2023.9.1.	
3	교육 중점	질리안듀베이		영어영문학과	조교수	7	조교수	2023.9.1.~ 2024.8.31.	2023.9.1.	
4	연구 중점	라즈니쉬쿠마미쓰라		물리학과	조교수		조교수	2023.9.1.~ 2024.8.31.	2023.9.1.	
5	연구 중점	아라마노하		물리학과	조교수		조교수	2023.9.1.~ 2024.8.31.	2023.9.1.	
6	연구 중점	로이니파		물리학과	조교수		조교수	2023.9.1.~ 2024.8.31.	2023.9.1.	
7	연구 중점	아를라사이쿠마르		물리학과	조교수		조교수	2023.9.1.~ 2024.8.31.	2023.9.1.	
8	연구 중점	만다리코테쉬쿠마		화학과	조교수		조교수	2023.9.1.~ 2024.8.31.	2023.9.1.	
9	연구 중점	다난쟈이야다프		생명과학과	조교수		조교수	2023.9.1.~ 2024.8.31.	2023.9.1.	
10	연구 중점	마노하란 란지트쿠마르		건설시스템 공학과	조교수		조교수	2023.9.1.~ 2024.8.31.	2023.9.1.	
11	교육 중점	에밀리앙고호		건축학부	조교수	11	조교수	2023.9.1.~ 2024.8.31.	2023.9.1.	
12	연구 중점	셀라카누라즈쿠마르		신소재공학부	조교수		조교수	2023.9.1.~ 2024.8.31.	2023.9.1.	
13	연구 중점	트롱원탑원		화학공학부	조교수		조교수	2023.9.1.~ 2024.8.31.	2023.9.1.	
14	연구 중점	엔수벤라재쉬		화학공학부	조교수		조교수	2023.9.1.~ 2024.8.31.	2023.9.1.	
15	연구 중점	소나이무트모한도스		화학공학부	조교수		조교수	2023.9.1.~ 2024.8.31.	2023.9.1.	
16	연구 중점	카나카라아루차미		화학공학부	조교수		조교수	2023.9.1.~ 2024.8.31.	2023.9.1.	
17	연구 중점	알라구말라이 크리쉬나판디		화학공학부	조교수		조교수	2023.9.1.~ 2024.8.31.	2023.9.1.	
18	교육 중점	마이클매카티		기계공학부	부교수	14	부교수	2023.9.1.~ 2024.8.31.	2023.9.1.	
19	연구 중점	파츠남세티		기계공학부	조교수		조교수	2023.9.1.~ 2024.8.31.	2023.9.1.	
20	연구 중점	바티쿠티 프랍하카르		기계공학부	조교수		조교수	2023.9.1.~ 2024.8.31.	2023.9.1.	
21	연구 중점	바부바출라		기계공학부	조교수		조교수	2023.9.1.~ 2024.8.31.	2023.9.1.	

간서명	이사장	한국어	이사	한국어	이사	한국어
-----	-----	-----	----	-----	----	-----

NO	구분	성명	생년월일	학부(과)	현 직위	발령사항			비고 (국적)
						호봉	내역	임용기간	
22	연구 중점	코라말라나븐쿠마		기계공학부	조교수		조교수	2023.9.1.~ 2024.8.31.	2023.9.1.
23	연구 중점	판카즈씽		전자공학과	조교수		조교수	2023.9.1.~ 2024.8.31.	2023.9.1.
24	연구 중점	샤피크무하마드		정보통신 공학과	조교수		조교수	2023.9.1.~ 2024.8.31.	2023.9.1.
25	연구 중점	라말인감 스리니바산		원예생명 과학과	조교수		조교수	2023.9.1.~ 2024.8.31.	2023.9.1.
26	연구 중점	아드비쉬미쉬라		생명공학과	조교수		조교수	2023.9.1.~ 2024.8.31.	2023.9.1.
27	연구 중점	바사베나가라즈		생명공학과	조교수		조교수	2023.9.1.~ 2024.8.31.	2023.9.1.
28	연구 중점	티와리프라그야		생명공학과	조교수		조교수	2023.9.1.~ 2024.8.31.	2023.9.1.
29	연구 중점	랍비무하마드		생명공학과	조교수		조교수	2023.9.1.~ 2024.8.31.	2023.9.1.
30	연구 중점	세이야드 사이드아마드		의생명공학과	조교수		조교수	2023.9.1.~ 2024.8.31.	2023.9.1.
31	교육 중점	마틴두우기		영어교육과	부교수	24	부교수	2023.9.1.~ 2024.8.31.	2023.9.1.
32	교육 중점	아르템 클레멘티에프		음악학부	조교수	12	부교수	2023.9.1.~ 2024.8.31.	2023.9.1.
33	교육 중점	타드터훈		새마을국제개 발학과	부교수	26	부교수	2023.9.1.~ 2024.8.31.	2023.9.1.
34	교육 중점	제시카옥		교양학부	부교수	19	부교수	2023.9.1.~ 2024.8.31.	2023.9.1.
35	교육 중점	에릭쉬나이더		교양학부	부교수	17	부교수	2023.9.1.~ 2024.8.31.	2023.9.1.
36	교육 중점	마이클설록		교양학부	부교수	14	부교수	2023.9.1.~ 2024.8.31.	2023.9.1.
37	교육 중점	윌리암리즈먼		국제학부	조교수	10	조교수	2023.9.1.~ 2024.8.31.	2023.9.1.

간서명	이사장	장	이 사	장	이 사	장
-----	-----	---	-----	---	-----	---

[붙임8] 영남대학교 2023.09.01.자 외국인교원 승진임용(안)  
(제11호의안 관련)

외국인교원 승진임용 승인 요청 현황

NO	구분	성명	생년월일	학부(과)	현재 직위	발령내역				비고 (국적)
						직위	호봉	임용기간	발령일자	
1	교육종점	아르템 클레멘티에프		음악학부	조교수	부교수에 임함	12	2023.9.1.~2024.8.31.	2023.9.1.	

간서명	이사장	3.10.2023	이사	3.10.2023	이사	3.10.2023
-----	-----	-----------	----	-----------	----	-----------

[붙임9] 영남대학교 교원 임용 보고의 건  
(보고사항 제1호 관련)

□ 교원 의원면직 현황

- 정년계열 전임교원 의원면직 현황

대학명	임용 유형	성명	생년월일	학부(과)	직위	발령사항		비고
						내역	발령일자	
영남 대학교	면직	김국현		내과학교실	교수	의원면직	2023.5.31.	
		신동구		내과학교실	교수	의원면직	2023.6.16.	

- 외국인교원 의원면직 현황

임용 유형	구분	성명	생년월일	학부(과)	직위	발령사항		비고 (국적)
						내역	발령일자	
면직	연구 중점	싱사트완트		전기공학과	조교수	의원면직	2023.4.7.	
		바후구나아슈토쓰		식품공학과	조교수	의원면직	2023.4.10.	
		디팍라자람파틸		신소재공학부	조교수	의원면직	2023.4.30.	
		푼다리캄고우드		신소재공학부	조교수	의원면직	2023.4.30.	
		데바난다모하파트라		신소재공학부	조교수	의원면직	2023.4.30.	
		가네쉬타나지샤반		화학공학부	조교수	의원면직	2023.5.31.	
		자인릴리안스		신소재공학부	조교수	의원면직	2023.5.31.	

□ 석좌교수 재추대 현황

임용 유형	성명	생년월일	학부(과)	직위	발령사항		비고
					내역	발령일자	
재추대	이상천		기계공학부	석좌 교수	특임 석좌교수	2023.6.1.	1년
	이효수		경제금융학부				
	서길수		화학공학부				

간서명	이사장	2023.5.31	이사	2023.5.31	이사	2023.5.31
-----	-----	-----------	----	-----------	----	-----------

□ 주요 보직교원 임면 현황

연번	보직명	보직면직자		보직임명자			비고
		성명	면직일자	성명	부터	까지	
1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추진본부장	김재춘	2023-04-30	-	-	-	
2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사업관리단장	신승훈	2023-04-30	-	-	-	
3	스마트인재양성사업단장	김재홍	2023-04-30	-	-	-	
4	RIS사업추진본부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스마트인재양성사업단장	-	-	김재홍	2023-05-01	2024-01-31	

간서명	이사장	장재춘	이사	장재춘	이사	김재홍
-----	-----	-----	----	-----	----	-----

## [붙임10] 영남대학교의료원 직제규정 개정(안)

(제13호의안 관련)

현 행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2. 8. 17. <u>&lt;신 설&gt;</u>	개 정 안 <u>제1장 총칙</u>	개정사유 '장'신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영남학원 정관 제96조, 제97조 및 영남대학교 직제규정 제21조에 의하여 영남대학교 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산하 의과대학, 의과대학 부속병원(이하 "부속병원"이라 한다) 및 의과대학부속 영천병원(이하 "영천병원"이라 한다)의 직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 제2조 <현행과 같음>	
제2조(적용) 본 의료원의 직제는 학교법인 영남학원 정관, 영남대학교 학칙, 영남대학교 직제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u>&lt;신 설&gt;</u>	<u>제2장 의료원</u>	'장'신설
제3조(의료원장) ① 의료원에 의료원장을 둔다. ② 의료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③ 의료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의료원의 행정을 조정 통합하며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의료원장 유고시는 의과대학장, 부속병원장, 기획조정처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의료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간서명	이사장	정기현 부원장	이사	김민경 부원장	이사	김진수 부원장
-----	-----	------------	----	------------	----	------------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2. 8. 17.		
<p><b>제4조(임용 및 임기) ① 의과대학</b></p> <p>장, 부속병원장, 영천병원장, 기획조정처장, 사무처장, 의학연구처장, 국제보건의료협력처장은 총장이 임용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기획조정처장, 사무처장, 의학연구처장, 국제보건의료협력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p> <p>② 제1항 이외의 보직교원은 의료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용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p> <p>③ 의료원 각 부문의 전반적인 업무개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제도개선 등의 업무를 담당할 전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p>	<p><b>&lt;삭 제&gt;</b></p>	<p>현행 제4조제1항, 2항을 개정안 제10조로 이동.</p>
<p><b>제5조(기획조정처) ① 의료원에는 기획조정처를 두고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2급인 직원으로 보한다.</b></p> <p>② 기획조정처에는 기획부, 정보전산실을 두고 기획부장은 4급 이상의 직원으로, 정보전산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p> <p>③ 기획부에는 기획예산팀, 미래전략팀, 감사팀, 성과관리팀, 홍보협력팀을 두고, 각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되, 홍보협력팀장은 계약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p>	<p><b>제5조(기획조정처) ① 의료원장 직속으로 기획조정처를 두고,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2급인 직원으로 보한다.</b></p> <p>② 기획조정처에 부처장을 둘 수 있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되, 계약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p> <p>③ 기획조정처에 기획부, 전산개발운영팀, 정보보호팀을 두고, 부장은 4급 이상의 직원,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p>	<p>의료원장 직속기구 명시.</p> <p>부처장 직제 근거 마련. 정보전산실 폐지.</p> <p>현행 제5조제2항, 3항, 4항을 개정안 제5조제3항, 4 항에 반영. 홍보협력팀</p>

간서명	이사장	장·부속	이 사	기획조정처	이 사	정보전산실
-----	-----	------	-----	-------	-----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2. 8. 17.		
<p>④ 정보전산실에는 전산개발·운영팀, 정보보호팀을 두고, 각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p> <p>⑤ &lt;삭제 2019. 10. 16.&gt;</p>	<p>④ 기획부에 기획예산팀, 감사팀, 경영분석팀을 두고,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p> <p>⑤ &lt;현행과 같음&gt;</p>	직제 이동. 전산개발·운영팀 가운뎃점(.) 삭제 미래전략팀과 성과관리팀 통합하여 경영분석팀으로 명칭 변경.
<p>제5조의2(사무처) ① <u>의료원에 사무처를 두고</u>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되, <u>교직원이 아닌 자를 계약직으로 임용하여 보할 수 있다.</u></p> <p>② 사무처에는 총무부, 관리부를 두고 부장은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p> <p>③ 총무부에는 총무팀, 인사팀, 복지향상팀, 재무팀, <u>안전보건팀</u>을 관리부에는 구매팀, 자산팀, 시설팀, <u>의공팀</u>을 두고 각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제5조의2(사무처) ① <u>의료원장 직속으로 사무처를 두고</u>,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되, <u>계약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u></p> <p>② 사무처에 부처장을 둘 수 있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되, <u>계약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u></p> <p>③ 사무처에 총무부, <u>안전시설관리부</u>, 의공팀을 두고 부장은 4급 이상의 직원,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p> <p>④ 총무부에 총무팀, 인사팀, 복지향상팀, 재무팀, 구매팀을 두고,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p> <p>⑤ 안전시설관리부에 <u>안전보건팀</u>, 시설팀, 자산팀을 두고,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의료원장 직속기구 명시. 자구 수정. 부처장 직제 근거 마련. 현행 제5조의2제2항, 3항을 개정안 제5조의2제3항, 4항, 5항에 반영. 관리부 명칭 변경. 의공팀, 구매팀, 안전보건팀 직제 이동. 총무부와 안전시설관리부를 분리 기재.

간서명	이사장	장기현	이 사	3   2022.8.17	이 사	김진수
-----	-----	-----	-----	---------------	-----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2. 8. 17. 제5조의3(의학연구처) ① <u>의료원에</u> 의학연구처를 두고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제5조의3(의학연구처) ① <u>의료원장 직속으로</u> 의학연구처를 두고,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② 의학연구처에 부처장을 둘 수 있고 <u>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u> ③ 의학연구처에 융복합의과학연구센터를 두고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의료원장 직속기구 명시. 부처장 임용 요건 변경
제5조의4(국제보건의료협력처) <u>의료원에</u> 국제보건의료협력처를 두고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제5조의4(국제보건의료협력처) ① <u>의료원장 직속으로</u> 국제보건의료협력처를 두고,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② <u>국제보건의료협력처에 부처장을 둘 수 있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되, 계약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u>	의료원장 직속기구 명시. 제2항 신설에 따라 항번호 부여. 부처장 직제 근거 마련.
<u>&lt;신 설&gt;</u>		
<u>&lt;신 설&gt;</u>	제5조의5(혁신커뮤니케이션실) ① <u>의료원장 직속으로 혁신커뮤니케이션실을 두고, 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되, 계약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u> ② <u>혁신커뮤니케이션팀을 두고,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되, 계약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u>	조신설. 혁신커뮤니케이션실 신설. 현행 홍보협력팀 명칭 변경 및 직제 이동.
<u>&lt;신 설&gt;</u>	제5조의6(전문위원) <u>의료원에 의료원 각 부문의 전반적인 업무개선</u>	조신설. 현행 제4조 제3항을

간서명	이사장	한국대학	이 사	한국대학	이 사	한국대학
-----	-----	------	-----	------	-----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2. 8. 17.	<u>에 대한 연구개발 및 제도개선 등의 업무를 담당할 전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u>	개정안 제5조의6에 반영.
제6조(사무국)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제6조(사무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u>제3장 의과대학</u>	'장'신설
<u>제7조(의과대학)</u> ① 의과대학에 학장을 두며 원장과 학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② 의과대학에 학장을 보좌하는 부학장을 두며 부학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③ 의과대학에 의학과와 의예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④ 의과대학에 각각의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5급 이상인 직원으로 보한다. ⑤ 의과대학에 각각 다음 각 호의 교실을 둔다. 1. ~ 35. <생략>  ⑥ 각 교실에 직원을 둘 수 있다.  ⑦ 의과대학에 의학도서관, 의학교육실, 학생지원실, 연구지원실을 두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조(학장) ① 의과대학에 학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② 학장 산하에 의학도서관, 의학교육실, 학생지원실, 연구지원실을 두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제목 변경 및 자구 수정 현행 제7조제2항을 개정안 제7조의2에 반영.
	<u>&lt;삭 제&gt;</u>	현행 제7조제3항, 4항을 개정안 제7조의2제2 항, 3항에 반영.
	<u>&lt;삭 제&gt;</u>	현행 제7조제5항, 6항을 개정안 제7조의3에 반영.
	<u>&lt;삭 제&gt;</u>	
	<u>&lt;삭 제&gt;</u>	현행 제7조제7항을 개정안 제7조제2항에 반영.

간서명	이사장	한 <del>재우</del>	이사	3/ <del>119</del>	이사	김 <del>진수</del>
-----	-----	-----------------	----	-------------------	----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2. 8. 17. <u>사항은 따로 정한다.</u>		
<u>&lt;신 설&gt;</u>	<p><u>제7조의2(부학장) ① 의과대학에 학장을 보좌하는 부학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u></p> <p><u>② 부학장 산하에 의학과와 의예과를 두고,과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u></p> <p><u>③ 부학장 산하에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u></p>	반영. 조신설. 현행 제7조제2항,3항, 4항을 개정안 제7조의2에 반영. 부학장 산하 명시.
<u>&lt;신 설&gt;</u>	<p><u>제7조의3(의학과) ① 의학과에 다음과 각 호의 교실을 둔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부학교실</li> <li>2. 생리학교실</li> <li><u>3. 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u></li> <li>4. 약리학교실</li> <li>5. 미생물학교실</li> <li>6. 예방의학교실</li> <li>7. 병리학교실</li> <li>8. 내과학교실</li> <li>9. 외과학교실</li> <li>10. 정형외과학교실</li> <li><u>11. 심장혈관흉부외과학교실</u></li> <li>12. 신경외과학교실</li> <li>13. 성형외과학교실</li> <li>14. 소아청소년과학교실</li> <li>15. 산부인과학교실</li> <li>16. 신경과학교실</li> <li>17. 정신건강의학교실</li> <li>18. 안과학교실</li> <li>19. 비뇨의학교실</li> <li>20. 피부과학교실</li> </ol>	조신설. 의학과 산하 명시. 현행 제7조제5항을 개정안 제7조의3제1 항에 반영. 교실 명칭에 가운데점(·) 삭제 홍부외과교 실 명칭 변경. 교실 순서 및 띄어쓰기 수정.

간서명	이사장	한국의대	이사	한국의대	이사	한국의대
-----	-----	------	----	------	----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2. 8. 17.		
	21. 이비인후과학교실 22. 영상의학과학교실 23. 방사선종양학교실 24. 마취통증의학교실 25. 진단검사의학교실 26. 재활의학교실 27. 응급의학교실 28. 가정의학교실 29. 치과학교실 30. 핵의학교실 31. 의학교육인문학교실 <b>② 각 교실에 직원을 둘 수 있다.</b>	
<b>&lt;신 설&gt;</b>	<b>제4장 부속병원</b>	현행 제7조 제6항을 개정안 제7조의3제2 항으로 이동. '장'신설
<b>제8조(부속병원)</b> ① 부속병원에 병원장을 두며 병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② 병원장은 의료원장을 보좌하며 병원업무 및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부속병원에 부원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④ 부원장은 병원장을 보좌하며 병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⑤ 삭제 ⑥ 부속병원에는 다음 각 호의 진료 각 과(실·센터·클리닉)를 둔다.	<b>제8조(병원장)</b> ① 부속병원에 병원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및 자구 수정. 보한다. ② <현행과 같음>  <b>&lt;삭 제&gt;</b> <b>&lt;삭 제&gt;</b> <b>&lt;현행과 같음&gt;</b> <b>&lt;삭 제&gt;</b>	조제목 변경 제8조 제3항, 4항을 개정안 제8조의2에 반영.  현행 제8조 제6항을 개정안

간서명	이사장	장(재정)	이사	김(재정)	이사	김진숙
-----	-----	-------	----	-------	----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2. 8. 17.		
1. ~ 51. <생 략>		제8조의9에 반영.
<u>⑥의2. 내과에 소화기내과, 순환 기내과, 호흡기 · 알레르기내과, 내분비 · 대사내과, 신장내과, 혈 액 · 종양내과, 감염내과, 류마티 스내과, 통합내과 등의 분과를 둔 다.</u>	<u>&lt;삭 제&gt;</u>	현행 제8조 제6의2 항을 개정안 제8조의9제2 항으로 이동.
<u>⑥의3. 호흡기전문질환센터에 통 합진료센터, 예방관리센터, 교육 운영지원팀을 임상시험센터에 위 상연구지원팀, 면역원성평가연구 실을 두고 각 센터장 및 실장을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u>	<u>&lt;삭 제&gt;</u>	현행 제8조 제6의3 항, 6의4항, 6의5항을 개정안 제8조의8에 반영.
<u>⑥의4. 임상연구보호센터에 센터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 한다.</u>	<u>&lt;삭 제&gt;</u>	
<u>⑥의5. 응급의료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 원으로 보한다.</u>	<u>&lt;삭 제&gt;</u>	
<u>⑦ 진료 각 과(실 · 센터 · 클리닉) 에 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 원으로 보한다.</u>	<u>&lt;삭 제&gt;</u>	현행 제8조 제7항, 7의2항, 7의3항, 8항의 내용을 개정안 제8조의9에 반영.
<u>⑦의2. 내과의 각 분과장은 부교 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u>	<u>&lt;삭 제&gt;</u>	
<u>⑦의3. 분과장은 소속과장은 보좌 하며 해당분과의 전반적인 사항 을 운영하되 중요사항에 대해서 는 과장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 다.</u>	<u>&lt;삭 제&gt;</u>	
<u>⑧ 영상의학과에 영상의학팀, 진 단검사의학과에 진단검사의학팀, 직업환경의학과에 직업환경의학</u>	<u>&lt;삭 제&gt;</u>	

간서명	이사장	한	이 사		이 사	김
-----	-----	---	-----	--	-----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2. 8. 17. <u>팀, 건강증진센터에 건강증진팀,</u> <u>재활의학과에 재활치료팀을 두고,</u> <u>각 팀장은 6급 이상인 직원으로</u> <u>보하되, 건강증진팀장은 계약직원</u> <u>으로 임용하여 보할 수 있다.</u>		
<u>(9) 진료 각과(실, 센터·클리닉)</u> 에 필요시 수석기사를 둘 수 있 으며 기술적 7급 이상인 직원으 로 보한다.	<u>&lt;삭 제&gt;</u>	현행 제8조 제9항을 개정안 제8조의8제4 항 및 제8조의9제6 항에 반영.
<u>(10) 부속병원에는 교육수련실, 의</u> <u>료질향상실, 대외협력실, 간호본</u> <u>부, 약제부, 원무부를 두고, 교육</u> <u>수련실장, 의료질향상실장, 대외</u> <u>협력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u> <u>으로 간호본부장, 약제부장, 원무</u> <u>부장은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u> <u>하되, 의료질향상실장, 대외협력</u> <u>실장은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u> <u>할 수 있다.</u>	<u>&lt;삭 제&gt;</u>	현행 제8조 제10항, 11항을 개정안 제8조의3, 제8조의4, 제8조의5, 제8조의6, 제8조의7, 제8조의 10제1 항에 반영.
<u>(11) 교육수련실에는 교육수련팀,</u> <u>보건의료정보팀을 의료질향상실</u> <u>에는 의료질관리팀, 감염관리팀을</u> <u>대외협력실에는 진료협력팀, 국제</u> <u>의료팀, 사회사업팀을 간호본부에</u> <u>는 간호행정팀, 간호교육팀, 병동</u> <u>간호팀, 중환자간호팀, 수술간호</u> <u>팀, 외래간호팀, 응급간호팀을 두</u> <u>고 각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u> <u>로 보하되, 의료질관리팀장, 감염</u> <u>관리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u> <u>으로 국제의료팀장은 계약직원으</u> <u>로 임용하여 보할 수 있다.</u>	<u>&lt;삭 제&gt;</u>	
<u>(12) 부원장 산하에는 약제부, 원무</u>	<u>&lt;삭 제&gt;</u>	현행 제8조 제12항 을 개정안

간서명	이사장	한 정 우	이 사	정 우	이 사	김 천 수
-----	-----	-------------	-----	--------	-----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2. 8. 17.		
<p><u>부, 영양팀, 진료지원팀을 두고 약제부에는 약무팀, 조제팀을 원 무부에는 외래원무팀, 입원원무 팀, 보험심사팀, 법무지원팀을 두 고 각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 로 보한다.</u></p> <p><u>(13) 간호본부에 수간호사, 주임간 호사를 두고 7급 이상인 직원으 로 보한다.</u></p> <p><u>(14) ~ (17) &lt;생 략&gt;</u></p> <p><u>(18) 약제부에 수석약사를 둘 수 있으며 7급 이상인 직원으로 보 한다.</u></p>		제8조의10에 반영.
	<u>&lt;삭 제&gt;</u>	현행 제8조제13항 을 개정안 제8조의7제3 항으로 이동.
	<u>&lt;삭 제&gt;</u>	현행 제8조제18항 을 개정안 제8조의10제4 항으로 이동. 조신설.
	<u>&lt;신 설&gt;</u>	현행 제8조제3,4항 반영.
	<p><u>제8조의2(부원장) ① 부속병원에 부원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 원으로 보한다.</u></p> <p><u>② 부원장은 병원장을 보좌하며 병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신한 다.</u></p>	
<u>&lt;신 설&gt;</u>	<p><u>제8조의3(교육수련실) ① 병원장 직속으로 교육수련실을 두고, 실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 한다.</u></p> <p><u>② 교육수련실에 교육수련팀을 두고,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 로 보한다.</u></p>	조신설. 병원장 직속 기구 명시. 보건의료정보 팀 직제 이동.
<u>&lt;신 설&gt;</u>	<p><u>제8조의4(의료질향상실) ① 병원장 직속으로 의료질향상실을 두고, 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되, 계</u></p>	조신설. 실장 임용요건 변경.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	-----	--	-----	--	-----	--

현 행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2. 8. 17.	개 정 안 <u>약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u> <u>② 의료질향상실에 의료질관리팀</u> <u>을 두고,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u> <u>또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u> <u>한다.</u>	개정사유 현행 제8조제10, 11항을 개정안 제8조의3 ~ 제8조의7에 반영. 조신설. 병원장 직속 기구 명시. 감염관리실 신설 및 감염관리팀 직제 이동.
<u>&lt;신 설&gt;</u>	<u>제8조의5(감염관리실) ① 병원장</u> <u>직속으로 감염관리실을 두고, 실</u> <u>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u> <u>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되, 계약</u> <u>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u> <u>② 감염관리실에 감염관리팀을</u> <u>두고,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 또</u> <u>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u> <u>다.</u>	조신설. 병원장 직속 기구 명시. 감염관리실 신설 및 감염관리팀 직제 이동.
<u>&lt;신 설&gt;</u>	<u>제8조의6(대외협력실) ① 병원장</u> <u>직속으로 대외협력실을 두고, 실</u> <u>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u> <u>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되, 계약</u> <u>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u> <u>② 대외협력실에 진료협력팀, 국</u> <u>제의료팀, 사회사업팀을 두고, 팀</u> <u>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u> <u>되, 국제의료팀장은 계약직원으로</u> <u>보할 수 있다.</u>	조신설. 병원장 직속 기구 명시. 실장 임용요건 변경.
<u>&lt;신 설&gt;</u>	<u>제8조의7(간호본부) ① 병원장 직</u> <u>속으로 간호본부를 두고, 본부장</u> <u>은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u> <u>② 간호본부에 간호행정팀, 간호</u> <u>교육팀, 병동간호팀, 중환자간호</u>	조신설. 병원장 직속 기구 명시.

간서명	이사장	이사장	이 사	31	이사	이사장
-----	-----	-----	-----	----	----	-----

현 행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2. 8. 17.	개 정 안	개정사유
	<p><u>팀, 수술간호팀, 외래간호팀, 응급간호팀을 두고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u></p> <p><u>③ 간호본부에 수간호사, 주임간호사를 두고 7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u></p>	
<p><u>&lt;신 설&gt;</u></p> <p><u>제8조의8(특성화센터) ① 부속병원에 다음 각 호의 특성화센터를 병원장 직속으로 두고,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응급의료센터</u></li> <li><u>2. 임상시험센터</u></li> <li><u>3. 호흡기전문질환센터</u></li> <li><u>4. 임상연구보호센터</u></li> </ul> <p><u>② 호흡기전문질환센터에 통합진료센터, 예방관리센터, 교육운영지원팀을 두고,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u></p> <p><u>③ 임상시험센터에 임상연구지원팀, 면역원성평가연구실을 두고, 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u></p> <p><u>④ 각 센터에 필요시 수석기사를 둘 수 있으며 기술직 7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u></p>	<p>조신설. 병원장 직속 기구 명시. 현행 제8조제6항 제28,46,48,50호 를 개정안 제8조의8제1항 제1,2,3,4호 에 반영. 현행 제8조제6의3, 4항을 개정안 제8조의8제2, 3항에 반영.</p> <p>현행 제8조제9항을 개정안 제8조의8제4 항에 반영.</p>	

간서명	이사장	한재숙	이 사	3. 김수연	이 사	김찬수
-----	-----	-----	-----	--------	-----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2. 8. 17.	<p><u>의 교원으로 보한다.</u></p> <p>1. 내과 2. 신경과 3. 정신건강의학과 4. 외과 5. 정형외과 6. 신경외과 7. <u>심장혈관흉부외과</u> 8. 성형외과 9. 소아외과 10. 마취통증의학과 11. 산부인과 12. 소아청소년과 13. 안과 14. 이비인후과 15. 피부과 16. 비뇨의학과 17. 영상의학과 18. 방사선종양학과 19. 핵의학과 20. 재활의학과 21. 치과 22. 진단검사의학과 23. 병리과 24. 가정의학과 25. 응급의학과 26. 직업환경의학과 27. 수술실 28. 중환자실 29. 인공신장실 30. 건강증진센터 31. 통증치료실 32. <u>암치유센터</u></p>	<p>현행 제8조제6항을 개정안 제8조의9제1 항에 반영. 흉부외과 명칭 변경.</p> <p>현행 제8조제6항제 28,46,48, 50호는 개정안 제8조의8제1 항제1,2,3,4호 로 이동.</p> <p>암센터 명칭 변경.</p>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	-----	--	-----	--	-----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2. 8. 17.		
	33. 소화기센터 <u>34. 심장혈관센터</u> 35. 당뇨클리닉 36. 척추센터 37. 유방센터 38. 뇌졸중센터 39. 조혈모세포은행 40. 신생아중환자실 41. 임상약리실 42. 호스피스실 43. 수혈관리실 <u>44. 안센터</u> <u>45. 장기이식센터</u>	심혈관센터 명칭 변경.  자구 수정.
	<u>② 내과에 소화기내과, 심장내과,            호흡기알레르기내과, 내분비대사            내과, 신장내과, 혈액종양내과, 간            염내과, 류마티스내과, 통합내과            등의 분과를 둔다.</u>	순환기내과 명칭 변경. 분과 명칭에 가운데 점(·) 삭제  현행 제8조제6의2 항 반영.
	<u>③ 분과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으로 보한다.</u>	현행 제8조제7의2 항을 개정안 제8조의9제3 항에 반영.
	<u>④ 분과장은 소속과장을 보좌하            며 해당분과의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하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다.</u>	현행 제8조제7의3 항을 개정안 제8조의9제4 항으로 이동.
	<u>⑤ 영상의학과에 영상의학팀, 진            단검사의학과에 진단검사의학팀,            직업환경의학과에 직업환경의학</u>	현행 제8조제8항을 개정안 제8조의9제5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	-----	--	-----	--	-----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2. 8. 17.	<p>팀, 건강증진센터에 건강증진팀, 재활의학과에 재활치료팀을 두고,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 하되, 건강증진팀장은 계약직원으 로 보할 수 있다.</p> <p>⑥ 진료부서에 필요시 수석기사 를 둘 수 있으며 기술직 7급 이 상의 직원으로 보한다.</p>	항에 반영.
	<p>제8조의10(진료지원부서) ① 부원 장 산하에 약제부, 원무부, 영양 팀, 진료지원팀, 의료정보팀을 두 고, 부장은 4급 이상의 직원으로,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 한다.</p> <p>② 약제부에 약무팀, 조제팀을 두 고,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p> <p>③ 원무부에 외래원무팀, 입원원 무팀, 보험심사팀, 법무지원팀을 두고, 팀장은 6급 이상의 직원으 로 보한다.</p> <p>④ 약제부에 수석약사를 둘 수 있 으며 7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p>	<p>현행 제8조 제9항을 개정안 제8조의9제6 항에 반영.</p> <p>조신설. 부원장 산하 명시. 보건의료정보 팀 직제 이동 및 명칭 변경.</p> <p>현행 제8조 제12항, 18항을 개정안 제8조의10제1, 2, 3, 4항에 반영. 약제부와 원무부를 분리 기재.</p>
<u>&lt;신 설&gt;</u>	<u>제5장 영천병원</u>	'장'신설
<p>제9조(영천병원) ① 영천병원에 병원 장을 두며 병원장은 부교수 이상 의 교원 또는 임상교원, 전문직 전 문의사, 임기제 임상의사로 보한다. ② 병원장은 의료원장을 보좌하며</p>	<p>제9조(병원장) ① 영천병원에 병원장 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임상교원, 전문직 전문의사, 임기제 임상의사로 보한다. ② &lt;현행과 같음&gt;</p>	조제목 변경 및 자구 수정

간서명	이사장	간서명	이사	간서명	이사	간서명
-----	-----	-----	----	-----	----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2. 8. 17. 병원업무 및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 한다.		
<u>③ 영천병원에 부원장을 두며 부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임상교원, 전문직 전문의사, 임기 제 임상의사로 보한다.</u>	<u>&lt;삭 제&gt;</u>	현행 제9조 제3, 4항을 개정안 제9조의2에 반영.
<u>④ 부원장은 병원장을 보좌하며 병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신한 다.</u>	<u>&lt;삭 제&gt;</u>	
<u>⑤ 삭제</u>	<u>⑤ &lt;현행과 같음&gt;</u>	
<u>⑥ 영천병원에는 다음 각 호의 진료 각 과(실)를 둔다.</u>	<u>&lt;삭 제&gt;</u>	현행 제9조 제6항을 개정안 제9조의5제1 항에 반영.
1. ~ 26. <생 략>		
<u>⑥의2. 내과에 소화기내과, 순환 기내과, 호흡기·알레르기내과, 내분비·대사내과, 신장내과, 혈 액·종양내과, 감염·류마티스내 과 등의 분과를 둘 수 있다.</u>	<u>&lt;삭 제&gt;</u>	현행 제9조 제6의2, 7, 8항을 개정안 제9조의5에 반영.
<u>⑦ 진료 각 과(실)에 과장 또는 실장을 두고 과장 및 실장은 부 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임상교원, 전문직 전문의사, 임기제 임상의 사로 보한다.</u>	<u>&lt;삭 제&gt;</u>	
<u>⑧ 진료 각 과(실)에 수석기사를 둘 수 있으며 기술직 7급 이상인 직원으로 보한다.</u>	<u>&lt;삭 제&gt;</u>	
<u>⑨ 영천병원의 진료지원과 행정 을 위하여 QI실, 교육연구부, 사 무부, 간호부, 약제과를 두며 QI 실장, 교육연구부장은 부교수 이</u>	<u>&lt;삭 제&gt;</u>	현행 제9조 제9, 10, 11항을 개정안 제9조의3, 제9조의4,

간서명	이사장	○	이 사	○	이 사	○
-----	-----	---	-----	---	-----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2. 8. 17.		
<p><u>상의 교원 또는 임상교원, 전문직 전문의사, 임기제 임상의로, 사무부장 및 간호부장은 4급 이상인 직원, 약제과장은 6급 이상인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간호부장, 약제과장은 계약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u></p> <p><u>⑩ QI실에는 적정진료팀, 감염관리팀을 사무부에는 기획재무팀, 총무팀, 전산팀, 원무팀, 보험심사팀, 자산관리팀을 간호부에는 간호행정팀, 간호교육팀을 두고 각 팀장은 7급 이상인 직원으로 보한다.</u></p> <p><u>⑪ 간호부에 수간호사, 주임간호사를 약제과에 수석약사를 둘 수 있으며 수간호사 및 수석약사는 7급 이상인 직원, 주임간호사는 8급 이상인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수석약사는 계약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u></p>	<p><u>&lt;삭 제&gt;</u></p> <p><u>&lt;삭 제&gt;</u></p>	<p>제9조의6에 반영.</p>
<p><u>&lt;신 설&gt;</u></p>	<p><u>제9조의2(부원장) ① 영천병원에 부원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임상교원, 전문직 전문의사, 임기제 임상의사로 보한다.</u></p> <p><u>② 부원장은 병원장을 보좌하며 병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신한다.</u></p>	<p>조신설. 현행 제9조 제3항, 4항을 개정안 제9조의2에 반영.</p>
<p><u>&lt;신 설&gt;</u></p>	<p><u>제9조의3(의료질향상실) ① 병원장 직속으로 의료질향상실을 두고, 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임상교원, 전문직 전문의사, 임기</u></p>	<p>조신설. 병원장 직속기구 명시. 직제명칭 및 실장</p>

간서명	이사장	2022. 8. 17.	이 사	2022. 8. 17.	이 사	2022. 8. 17.
-----	-----	--------------	-----	--------------	-----	--------------

현 행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2. 8. 17.	개 정 안	개정사유
	<p><u>제 임상의사,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되, 계약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u></p> <p><u>② 의료질향상실에 의료질관리팀, 갑염관리팀을 두고, 팀장은 7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u></p>	임용요건 변경. 현행 적정진료팀 명칭 변경.
<u>&lt;신 설&gt;</u>	<p><u>제9조의4(사무부) ① 병원장 직속으로 사무부를 두고, 부장은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u></p> <p><u>② 사무부에 기획제무팀, 총무팀, 전산팀, 원무팀, 보험심사팀, 자산 관리팀을 두고 팀장은 7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u></p>	조신설. 사무부 직제 부원장 산하에서 병원장 직속으로 이동.
<u>&lt;신 설&gt;</u>	<p><u>제9조의5(진료부서) ① 부원장 산하에 다음 각 호의 진료부서를 두고, 진료부서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임상교원, 전문직 전문의사, 임기제 임상의사로 보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내과</li> <li>2. 신경과</li> <li>3. 정신건강의학과</li> <li>4. 외과</li> <li>5. 정형외과</li> <li>6. 신경외과</li> <li>7. 성형외과</li> <li>8. 마취통증의학과</li> <li>9. 산부인과</li> <li>10. 소아청소년과</li> <li>11. 안과</li> <li>12. 이비인후과</li> </ol>	조신설. 진료 각 과를 진료부서로 명칭 변경. 현행 제9조제6항을 개정안 제9조의5제1 항에 반영.

간서명	이사장	한 <del>재</del> <sup>재</sup> 3	이 사	3 <del>재</del> <sup>재</sup> 3	이 사	김 <del>진</del> <sup>진</sup> 3
-----	-----	-------------------------------	-----	-------------------------------	-----	-------------------------------

현 행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2. 8. 17.	개 정 안	개정사유
	<p>13. 피부과      14. 비뇨의학과      15. 영상의학과      16. 진단검사의학과      17. 병리과      18. 재활의학과      19. 치과      20. 가정의학과      21. 응급실      22. 수술실      23. 중환자실      24. 인공신장실  <b>25. 건강증진실</b>  <u>② 내과에 소화기내과, 심장내과,</u>  <u>호흡기알레르기내과, 내분비대사</u>  <u>내과, 신장내과, 혈액종양내과, 감</u>  <u>염류마티스내과 등의 분과를 둘</u>  <u>수 있다.</u>  <u>③ 진료부서에 필요시 수석기사</u>  <u>를 둘 수 있으며 기술적 7급 이</u>  <u>상의 직원으로 보한다.</u> </p> <p><b>제9조의6(진료지원부서) ① 부원장</b>  <u>산하에 교육연구부, 간호부, 약제</u>  <u>과를 두고, 교육연구부장은 부교</u>  <u>수 이상의 교원 또는 임상교원,</u>  <u>전문직 전문의사, 임기제 임상의</u>  <u>사로 보하며, 간호부장은 4급 이</u>  <u>상의 직원, 약제과장은 6급 이상</u>  <u>의 직원으로 보하되, 간호부장과</u>  <u>약제과장은 계약직원으로 보할</u>  <u>수 있다.</u>  <u>② 간호부에 간호행정팀, 간호교</u> </p>	건강관리과 폐지. 종합건진실 명칭 변경 순환기내과 명칭 변경. 분과 명칭에 가운뎃점(·) 삭제. 현행 제9조제6의2 항 반영. 현행 제9조제8항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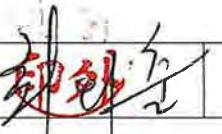
### <신 설>

간서명	이사장	장재숙	이사	김태경	이사	김진수
-----	-----	-----	----	-----	----	-----

현 행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2. 8. 17.	개 정 안	개정사유
	<p>육팀을 두고 팀장은 7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p> <p>③ 간호부에 수간호사, 주임간호사를 두고 수간호사는 7급 이상의 직원, 주임간호사는 8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p> <p>④ 약제과에 수석약사를 둘 수 있으며 7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되, 계약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p>	
<신 설>	제6장 임용 및 임기 등	'장'신설.
제10조 삭제	<p>제10조(임용 및 임기) ① 의과대학장, 부속병원장, 영천병원장, 기획조정처장, 사무처장, 의학연구처장, 국제보건의료협력처장은 총장이 임용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기획조정처장, 사무처장, 의학연구처장, 국제보건의료협력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p> <p>② 제1항 이외의 보직교원은 의료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용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p>	<p>현행 제4조제1항, 2항을 개정안 제10조로 이동</p>
제11조(부속기관) ① 의료원에는 필요한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생략>	<p>제11조(부속기관) ① 의료원에 필요한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p> <p>② &lt;현행과 같음&gt;</p>	필요한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자구 삭제

간서명	이사장	한	이 사	3	이 사	김
-----	-----	---	-----	---	-----	---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2. 8. 17.		
제12조(한시조직) ① 의료원에는 필요한 한시조직을 둘 수 있으며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 ④ <생략>	제12조(한시조직) ① 의료원에 필요한 한시조직을 둘 수 있으며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불필요한 자구 삭제
제13조(위원회) 의료원 행정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조 ~ 제16조 <현행과 같음>	
제14조(기구표) 의료원의 기구표는 별도로 둔다.		
제15조(개정) 의료원장은 이 직제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제16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료원장이 따로 정한다.		

간서명	이사장	한 	이 사		이 사	김 
-----	-----	---	-----	--	-----	---

[붙임11] 영남대학교의료원 직원보수규정 개정(안)

(제14호의안 관련)

현 행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2023. 2. 8.	개 정 안	개정사유
제22조(면허수당, 기술수당) ① 직무상 필요한 면허 및 기술을 보유하고 해당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보수지급일에 <u>별표14</u> 에 의하여 면허수당 또는 기술수당을 지급한다.	제22조(면허수당, 기술수당) ① 직무상 필요한 면허 및 기술을 보유하고 해당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보수지급일에 <u>별표14</u> 에 의하여 면허수당 또는 기술수당을 지급한다.	응급구조사 면허수당 신설
<u>부칙(0000.00.00.)</u> <u>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u> <u>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u> <u>한다.</u>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	-----	--	-----	--	-----	--

[현행] (별표 14)

면허수당 · 기술수당 지급표

구분	지급대상	월지급액
면허수당	약사	
	간호사	
	시설기사(관계기관 등록)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영양사	
	의료기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사서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신설>	
기술수당	약사	
	전산원	
	의공기사	
	언어치료사	
	청력검사원	
	기브스사	
	시료분석요원	

[개정안] (별표 14)

구분	지급대상	월지급액
면허수당	약사	
	간호사	
	시설기사(관계기관 등록)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영양사	
	의료기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사서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옹급구조사	
기술수당	약사	
	전산원	
	의공기사	
	언어치료사	
	청력검사원	
	기브스사	
	시료분석요원	

간서명	이사장	정재숙	이사	정재숙	이사	김진수
-----	-----	-----	----	-----	----	-----

[붙임12] 2024학년도 영남이공대학교 학생정원조정(안)  
(제18호의안 관련)

2024학년도(정원조정 전)			2024학년도(정원조정 후)			증감 인원 (B-A)
모집단위명	입학 정원 (A)	수업 연한	모집단위명	입학 정원 (B)	수업 연한	
간호학과	170	4	간호학과	179	4	+9
소프트웨어콘텐츠계열	71	3	소프트웨어융합과	71	3	
사이버보안계열	50	3	사이버보안과	40	3	-10
치위생과	55	3	치위생과	74	3	+19
보건의료행정과	70	3	보건의료행정과	65	3	-5
물리치료과	55	3	물리치료과	55	3	
스마트융합기계계열	200	2	스마트융합기계계열	187	2	-13
스마트팩토리과	25	2	폐과 (스마트융합기계계열로 통합)			-25
ICT반도체전자계열	156	2	ICT반도체전자계열	156	2	
전기자동화과	140	2	전기자동화과	140	2	
스마트e-자동차과	100	2	스마트 e-자동차과	85	2	-15
신설 (LiFE 2.0)	-	-	모빌리티계열	40	2	+40
화장품화공계열	96	2	화장품화공계열	90	2	-6
건축과	65	2	건축학과	50	2	-15
건설시스템과	40	2	건설시스템과	40	2	
식음료조리계열	90	2	글로벌외식조리과	75	2	-15
글로벌외식산업과	25	2	글로벌베이커리과	25	2	
박승철 헤어과	60	2	박승철 헤어과	50	2	-10
패션디자인마케팅과	50	2	패션디자인마케팅과	50	2	
패션라이브커머스과	20	2	폐과 (패션디자인마케팅과로 통합)			-20
K-뷰티과	40	2	K-뷰티과	40	2	
반려동물보건과	25	2	반려동물보건과	25	2	
반려동물스타일리스트과	25	2	반려동물스타일리스트과	30	2	+5
사회복지서비스과	120	2	사회복지서비스과	150	2	+30
사회복지·보육과	40	2	사회복지·보육과	40	2	
청소년복지상담과	20	2	청소년복지상담과	20	2	
i-경영회계계열	50	2	i-경영회계계열	50	2	
항공·호텔· 호텔·항공서비스전공	25	2	항공·호텔· 호텔·항공서비스전공	50	2	+25
카지노 계열 카지노&서베일런스전공	20	2	카지노 계열 카지노&서베일런스전공	25	2	+5
여행·항공마스터과	40	2	여행·항공마스터과	25	2	-15
부사관과	40	2	부사관과	25	2	-15
스포츠건강재활계열	60	2	스포츠재활과	45	2	-15
웹툰과	30	2	웹툰과	30	2	
메타버스애니메이션과	30	2	메타버스게임 애니메이션과	30	2	
모델테이너과	25	2	모델테이너과	30	2	+5
디자인스쿨	60	2	폐과 (시각영상디자인과 인테리어디자인과로 분리 신설)			-60
신설 (디자인스쿨에서 분리 신설)	-	-	시각영상디자인과	25	2	+25
신설 (디자인스쿨에서 분리 신설)	-	-	인테리어디자인과	25	2	+25
신설	-	-	글로벌레저서비스과	40	2	+40
합 계	2,188		합 계	2,177		-11

간서명	이사장	한국(주)	이 사	한국(주)	이 사	한국(주)
-----	-----	-------	-----	-------	-----	-------

[붙임13] 영남이공대학교 교원인사 규정 개정(안)

(제19호의안 관련)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이사회 통과일자 2022.06.15.	이사회 통과일자 000.00.00.	
제26조(승진임용시기) 교원의 승진임용 시기는 <u>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한다.</u>	제26조(승진임용시기) 교원의 승진임용 시기는 <u>매년 3월 1일자로</u> 한다.	교원의 승진임용 시기 변경
	<u>부 칙(0000.00.00)</u> <u>제 1 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0000</u> <u>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u> <u>제2조(승진임용시기 변경에 따른 경</u> <u>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u> <u>에 교원의 승진임용 시기가 9</u> <u>월 1일자인 경우 제26조의 규</u> <u>정에도 불구하고 규정 시행일</u> <u>이후 최초 승진임용 시기에</u> <u>한하여 9월 1일자로 한다.</u>	시행일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	-----	--	-----	--	-----	--

[붙임14] 영남이공대학교 초빙교원 임용 규정 개정(안)

(제20호의안 관련)

현 행 이사회 통과일자 2023.06.16.	개 정 안 이사회 통과일자 0000.00.00.	개정 사유
제 7 조(임용기간 및 재임용) 초빙교원 의 임용기간은 <u>2년</u> 으로 하고 대학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기간 동안의 업적 등 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원인 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 을 할 수 있다.	제 7 조(임용기간 및 재임용) 초빙교원 의 임용기간은 <u>1년</u> 으로 하고 대학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기간 동안의 업적 등 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원인 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 을 할 수 있다.	초빙교수 임용 기간 변경
	<u>부 칙(0000.00.00)</u> <u>제 1 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0000년</u> <u>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u>	시행일

간서명	이사장	한재숙	이 사	3  대표인	이 사	김진수
-----	-----	-----	-----	--------	-----	-----

[붙임15] 영남이공대학교 2023.08.31.자 교원 명예퇴직(안)  
(제21호의안 관련)

소속	직급	성명	정년퇴직일	임용일	근속년수 (명예퇴직일 기준)
스마트융합기계계열	교수	황남성	2028.08.31.	1993.09.01.	30년

간서명	이사장		이사		이사	
-----	-----	--	----	--	----	--

[붙임16] 영남이공대학교 교원 임용(보직) 보고의 건

(보고사항 제2호 관련)

보직명	보직면직자		보직임명자			비고
	성명	면직일자	성명	부터	까지	
기술형대학 학장	권용현	2023.04.30.	-	-	-	직제폐지

간서명	이사장		이사		이사	
-----	-----	--	----	--	----	--

## [붙임17] 학교법인 영남학원 정관 변경(안)

(제1호의안 관련)

현행	변경(안)	변경사유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 2023.04.19.		
<b>제96조(의료원) ①~③ &lt;생략&gt;</b> ④ 의료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기획조정처 2. 삭제 3. 삭제 4. 사무처 5. 국제보건의료협력처 6. 의학연구처  <b>&lt;신설&gt;</b> ⑤ 기획조정처에 처장을 두고, <u>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2급인 직원으로 보한다.</u>	<b>제96조(의료원) ①~③ &lt;현행과 같음&gt;</b> ④ 의료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기획조정처 2. 삭제 3. 삭제 4. 사무처 5. 국제보건의료협력처 6. 의학연구처 <b>7. 혁신커뮤니케이션실</b> ⑤ 기획조정처에 처장을 두며, <u>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다.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2급인 직원으로 보하며, 부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되, 계약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u>	영남대학교 의료원 직제규정 개정사항 반영
⑤의2 사무처에 처장을 두고, <u>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되, 교직원이 아닌 자를 계약직으로 임용하여 보할 수 있다.</u>	⑤의2 사무처에 처장을 두며, <u>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다.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부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처장과 부처장은 계약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u>	부처장 임용근거 마련
⑤의3 국제보건의료협력처에 처장을 두고, <u>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u>	⑤의3 국제보건의료협력처에 처장을 두며, <u>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다.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되, 계약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u>	부처장 임용근거 마련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	-----	--	-----	--	-----	--

현행	변경(안)	변경사유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 2023.04.19.																																																																																																																																														
⑤의4 의학연구처에 처장을 두며, 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다. <u>처장과 부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u>	⑤의4 의학연구처에 처장을 두며, 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다. <u>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부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되, 계약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u>	부처장 임용요건 조정																																																																																																																																												
<신설>	⑤의5 혁신커뮤니케이션실에 실장을 두고, 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되, 계약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실장 임용근거 마련																																																																																																																																												
제102조(사무직원의 정원) 법인, 학교 및 의료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u>별표 1·2·3·4-1</u> 과 같다. 단, 의료원 산하 영천병원의 정원은 따로 정하되 <u>별표 4-2</u> 와 같다.	제102조(사무직원의 정원) 법인, 학교 및 의료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u>별표 1·2·3·4-1</u> 과 같다. 단, 의료원 산하 영천병원의 정원은 따로 정하되 <u>별표 4-2</u> 와 같다.	영남대학교 일반직원 정원조정																																																																																																																																												
<신설>	부칙(2023.06.21.) <u>제1조(시행일) 개정 정관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2조 <u>별표2 개정 정관은 2023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u></u>	부칙신설																																																																																																																																												
(별표2) 영남대학교 일반직원 정원	(별표2) 영남대학교 일반직원 정원	영남대학교 일반직원 정원조정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합계</th><th>행정직</th><th>기술직</th><th>사서직</th><th>운영직</th><th>별정직</th></tr> </thead> <tbody> <tr> <td>합계</td><td>420</td><td>268</td><td>0</td><td>31</td><td>101</td><td>20</td></tr> <tr> <td>2급</td><td>5</td><td>5</td><td></td><td></td><td></td><td></td></tr> <tr> <td>3급</td><td>22</td><td>18</td><td>0</td><td>3</td><td></td><td>1</td></tr> <tr> <td>4급</td><td>48</td><td>40</td><td>0</td><td>6</td><td></td><td>2</td></tr> <tr> <td>5급</td><td>57</td><td>42</td><td>0</td><td>7</td><td>2</td><td>6</td></tr> <tr> <td>6급</td><td>88</td><td>52</td><td>0</td><td>8</td><td>22</td><td>6</td></tr> <tr> <td>7급</td><td></td><td>37</td><td></td><td>0</td><td>3</td><td>32</td></tr> <tr> <td>8급</td><td>111</td><td>37</td><td>111</td><td>0</td><td>2</td><td>32</td></tr> <tr> <td>9급</td><td></td><td>15</td><td></td><td>0</td><td>2</td><td>13</td></tr> </tbody> </table>	구분	합계	행정직	기술직	사서직	운영직	별정직	합계	420	268	0	31	101	20	2급	5	5					3급	22	18	0	3		1	4급	48	40	0	6		2	5급	57	42	0	7	2	6	6급	88	52	0	8	22	6	7급		37		0	3	32	8급	111	37	111	0	2	32	9급		15		0	2	13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합계</th><th>행정직</th><th>기술직</th><th>사서직</th><th>운영직</th><th>별정직</th></tr> </thead> <tbody> <tr> <td>합계</td><td>420</td><td>268</td><td>0</td><td>31</td><td>101</td><td>20</td></tr> <tr> <td>2급</td><td>7</td><td>7</td><td></td><td></td><td></td><td></td></tr> <tr> <td>3급</td><td>27</td><td>23</td><td>0</td><td>3</td><td></td><td>1</td></tr> <tr> <td>4급</td><td>53</td><td>45</td><td>0</td><td>6</td><td></td><td>2</td></tr> <tr> <td>5급</td><td>59</td><td>42</td><td>0</td><td>7</td><td>4</td><td>6</td></tr> <tr> <td>6급</td><td>90</td><td>52</td><td>0</td><td>8</td><td>24</td><td>6</td></tr> <tr> <td>7급</td><td></td><td>37</td><td></td><td>0</td><td>3</td><td>32</td></tr> <tr> <td>8급</td><td>99</td><td>33</td><td>99</td><td>0</td><td>2</td><td>28</td></tr> <tr> <td>9급</td><td></td><td>15</td><td></td><td>0</td><td>2</td><td>13</td></tr> </tbody> </table>	구분	합계	행정직	기술직	사서직	운영직	별정직	합계	420	268	0	31	101	20	2급	7	7					3급	27	23	0	3		1	4급	53	45	0	6		2	5급	59	42	0	7	4	6	6급	90	52	0	8	24	6	7급		37		0	3	32	8급	99	33	99	0	2	28	9급		15		0	2	13	
구분	합계	행정직	기술직	사서직	운영직	별정직																																																																																																																																								
합계	420	268	0	31	101	20																																																																																																																																								
2급	5	5																																																																																																																																												
3급	22	18	0	3		1																																																																																																																																								
4급	48	40	0	6		2																																																																																																																																								
5급	57	42	0	7	2	6																																																																																																																																								
6급	88	52	0	8	22	6																																																																																																																																								
7급		37		0	3	32																																																																																																																																								
8급	111	37	111	0	2	32																																																																																																																																								
9급		15		0	2	13																																																																																																																																								
구분	합계	행정직	기술직	사서직	운영직	별정직																																																																																																																																								
합계	420	268	0	31	101	20																																																																																																																																								
2급	7	7																																																																																																																																												
3급	27	23	0	3		1																																																																																																																																								
4급	53	45	0	6		2																																																																																																																																								
5급	59	42	0	7	4	6																																																																																																																																								
6급	90	52	0	8	24	6																																																																																																																																								
7급		37		0	3	32																																																																																																																																								
8급	99	33	99	0	2	28																																																																																																																																								
9급		15		0	2	13																																																																																																																																								

간서명	이사장	한국	이사	한국	이사	한국
-----	-----	----	----	----	----	----

[붙임18] 학교법인 영남학원 대학통합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제2호의안 관련)

## 학교법인 영남학원 대학통합위원회 운영규정

법인이사회 통과일자 : 2023.00.00.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영남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설치·경영하는 영남대학교 와 영남이공대학교의 통합을 위해 설치되는 대학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대학통합에 관한 사항 총괄
2. 대학통합 계획수립 및 의견조사 등에 관한 사항
3. 대학통합 신청서 작성 및 승인취득에 관한 사항
4. 대학통합 추진 및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5.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제 3 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사장이 위촉한다.

1. 영남대학교 총장
  2. 영남대학교 총장이 추천하는 3인
  3. 영남이공대학교 총장
  4. 영남이공대학교 총장이 추천하는 3인
  5. 이사장이 위촉하는 2인
- ②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통합대학 개교일까지로 한다. 단, 이사장은 필요시 위원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 ③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은 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이사장은 필요한 인원수만큼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제 4 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추진상황과 활동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및 활동기간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장이 제청하고 이사장이 위촉한다.

간서명	이사장	한 민 수	이 사	최 민 수	이 사	김 진 수
-----	-----	-------------	-----	-------------	-----	-------------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추진상황과 활동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조(활동기간)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 8 조(산하기관 협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할 경우, 법인과 법인산하 관계기관에 자료 및 의견 제출, 인력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수당 등) 위원회의 구성원, 분과위원회의 구성원, 기타 지원인력 등에 대해서는 법인의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타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보호)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은 중요 정보에 대한 비밀 보호의 의무와 책임을 지며,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활동과정에서 지득한 중요 정보는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당초 활동목적 외에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중요 정보란 관계법령 등에서 공개 의무가 부과된 범위에 속하지 않은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제11조(업무지원) 위원회의 업무지원은 법인 기획사업부에서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23.06.21)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간서명	이사장		이 사		이 사	
-----	-----	--	-----	--	-----	--